



보 도 자 료

책임자 변혜원 실장(금융소비자연구실, 3775-9027)
작성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(3775-9033)
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보도 2022. 12. 1(목) 조간부터
(온라인 11. 30(수) 12:00 이후)
배포 2022. 11. 29(화)
매수 총 3매

보험연구원, 『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방향』 연구보고서 발간

**“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는 수급권보호 강화, 사업자 경쟁력 제고,
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설정되도록!”**

-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 외 3인은 현행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편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“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방향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함
 - (연구배경 및 목적) 본 보고서는 현재 계약형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연금 지배구조를 기금형이 도입되거나 혼합형으로 운영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음
 - 퇴직연금은 올해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(중퇴기금)를 도입하고,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*(유사 기금형)를 운용하는 등 지배구조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음
- * 과학기술인공제회¹⁾에서도 이미 연금심의위원회를 두어 직원의 퇴직연금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다양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
- 한편, 보편적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여부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은 퇴직연금사업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슈임

1)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(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) 제4항

○ (지배구조 평가)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지배구조인 중퇴기금 제도,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와 논의 중인 보편적 기금형 제도가 퇴직연금 사업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

-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도입은 제도 특성상 근로복지공단이 배타적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으므로 금융시장에서 업권별 영향에는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되고,
- 적립금운용위원회* 도입 의무화는 사업자와 계열사(사업장) 간 내부시장(Captive Market)**의 구축으로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
 - 그러나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으로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투자운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자산운용사의 OCIO 서비스***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

* 300인 이상 DB형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

**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(금융기관)는 퇴직연금 가입기관(사업장)과 계열사 관계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다른 사업자가 침입하기 어려운 시장구조를 의미함

*** 자산규모가 큰 기관(연기금 등)이 자산 배분을 목적으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외부운용기관에 자산을 위탁해 운용하는 외부 위탁운용관리(OCIO: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)를 의미함

- 또한 보편적 기금형과 관련하여 DB형 사업장은 근로자의 참여 유인이 적고 DC형은 집합투자운용 허용 등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므로, 지배구조 변화의 영향은 단기적이기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

○ (해외사례 시사점) 선진국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기금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고수익 상품에 대한 적극적 투자에 따른 고위험 리스크에 대비하여 수급권보호를 강화하고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함

- 호주는 영리법인인 금융회사도 수탁법인(기금형 운영)이 될 수 있는 등 지배구조를 다양화하여 기금 간 경쟁 유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특성을 보임
- 영·미의 경우 기금형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탁자책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경향이 있음
 - 수탁자책임 수준에 준하는 충실의무, 주의의무, 자산관리의무, 정보관리의무로 체계화하고 범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
- 한편, 일본은 AIJ 사건* 이후 기금형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기금형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변경 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시사함

* 2012년 운용회사(AIJ)의 운용자금의 불법 투자로 가입자의 은퇴 자산이 사라지고, 연기금의 연쇄 파산이 초래된 사건

- (개편 방향)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수급권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자의 경쟁력이 제고되며,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되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음

〈표 1〉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

구분	주요내용
사업자의 경쟁력 제고	• 다양한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도록 함(온라인뱅크, 자산운용사 허용 등) • 중퇴기금,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기존 계약형과 경쟁체계 구축 • 기금형 도입 시 금융업권 사업자도 기금(수탁기관)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선택을 통한 기금 간 경쟁력 제고(호주, 영국 등)
수급권보호 강화	• 지배구조 개편에 대비하여 수급권보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제도 보완이 필요함 - 언변들형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- DB형(퇴직금제 포함) 사업장의 도산에 대비한 지급보장 강화 필요 (예: PBGC, PPF 등과 같은 기구 도입 검토, 예금보상한도 상향 검토)
수탁자 책임/권한 명확	•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- 영·미와 같이 수탁자책임을 충실의무, 주의의무, 자산관리의무, 정보관리의무로 체계화하고 범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• 수탁자보증보험과 수탁자책임보험 도입을 검토하여 지배구조 개편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

첨부: 연구보고서 『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방향』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